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制定 1995. 7. 1 大統領令 第14,693號

第 1條(目的)

第 2條(小河川의 指定基準)

第 3條(許可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 4條(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樹立)

第 5條(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變更)

第 6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承認)

第 7條(非管理廳의 小河川工事 施行)

第 8條(小河川工事 竣工検査)

第 9條(所要工事費의豫置)

第10條(住民意見의 聽取等)

第11條(占用등의 許可範圍)

第12條(占用등의 申告)

第13條(原狀回復費用의豫置)

第14條(小河川 整備狀態의 點檢)

第15條(小河川의 收益과 費用의 範圍等)

第16條(廢川敷地등의 交換)

第17條(權限의 委任)

附 則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制定 1995. 7. 1 大統領令 第14,693號

第1條(目的) 이 영은 小河川整備法(이하 “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小河川의 指定基準) 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자치구의 區廳長(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小河川은 일시적이 아닌 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小河川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許可에 관한 規定의 準用) 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중 許可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條(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수립) ① 法 第6條第2項第5號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사항을 말한다.

1. 小河川工事 시행에 관한 사항

2. 고수부지 조성등 小河川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당해 지역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小河川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内務部長官은 法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管理廳의 意見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内務部長官은 綜合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環境部長官 및 管理廳에 통보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이를 당해 管理廳의 공보 또는 계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法 第6條第4項 단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小河川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第5條(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變更) ① 管理廳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小河川整備中期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1. 小河川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재해등의 방생으로 小河川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3. 연도별 小河川整備事業計劃이 小河川 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시행

하거나 다른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으로부터 中期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보고를 받은 内務部長官은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法 第7條第2項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小河川整備事業計劃

2. 연도별 재원조달대책

3. 小河川整備의 효과에 관한 사항

第6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承認) ① 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内務部長官이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대상 小河川 선정의 타당성

2. 中期計劃과의 적합성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가능성

4. 인접한 管理廳의 小河川整備計劃과의 연계성

5.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수정의 필요성

② 内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施行計劃을 검토한 결과,施行計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管理廳의 意見을 들어施行計劃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内務部長官은施行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環境部長官 및 管理廳에 통보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第7條(非管理廳의 小河川工事 施行) ① 管理廳이 아닌者が 法 第10條第1項 본문의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施行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小河川工事許可申請書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法 第10條第1項 단서에서 “大統領수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小河川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에 있어서의 小河川의 보전행위를 말한다.

③ 管理廳이 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法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中期計劃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 여부

2.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者(이하 “權利者”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權利者가 당해 공사시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의 여부

3.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4. 구조물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 管理廳은 法 第10條第1項 본문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시행을 许可한 때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許可내용을 당해 管理廳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8條(小河川工事 竣工検査) ① 小河川工事を 시행하는者が 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検査를 받고자 할 때에는 竣工検査申請書에 竣工設計圖書 및 費用精算書를 첨부하여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하

며, 管理廳은 당해 공사가 許可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竣工認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小河川工事의 시행許可를 받은者が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예정일이나 준공예정일 내에 공사를 착공 또는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管理廳에 미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第9條(所要工事費의 預置) ① 管理廳은 法 第10條第1項 본문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施行許可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이거나 공사에 6월이상 소요되고 공사로 인한 재해발행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許可신청인에게 소요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管理廳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요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廳은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第119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管理廳은 小河川工事が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신청인에게 第2項 본문의 規定에 의한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第2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보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10條(住民意見의 聽取等) ① 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意見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各號와 같다.

1. 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지정 및 폐지

2. 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예정지

의 지정 및 변경

3. 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의 수립

4. 기타 小河川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管理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意見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장소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료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意見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聽取 사항의 주요내용

3. 意見제출기간 기타 意見聽取에 필요한 사항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고된 意見聽取사항에 대하여 意見이 있는 者는 第2項 第3호의 規定에 의한 意見제출기간동안 意見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管理廳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제출한 意見을 반영하여야 한다.

第11條(占用등의 許可範圍) 法 第14條第1項 단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小河川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流水 및 土地를 관습적으로 占用하거나 小河川附屬物 또는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流水 및 土地와 小河川附屬物을 일시적으로 占用하는 경우

第12條(占用등의 申告) ① 法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占用등을 신고하는 者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土地의

이용자등 占用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 받은 내용을 당해 管理廳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13條(原狀回復費用의 預置) ① 管理廳은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 공사의施行許可를 하거나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 占用등의 許可를 함께 있어서 許可신청인에게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原狀回復費用으로 管理廳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예치한 소요공사비가 原狀回復費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 본문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費用의 예치는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廳은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法 시행령 第119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管理廳은 許可신청인이 小河川을 원상으로 회복시켰거나 法 第16條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義務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신청인에게 第2項 본문의 規定에 의한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第2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보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14條(小河川 整備狀態의 點檢) ① 管理廳은 小河川의 정비상황과 小河川의 占用상황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内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特別市長·廣城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합동으로 小河川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第15條(小河川의 收益과 費用의 範圍等)

① 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法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처분금

2. 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者가 부담한 비용

3. 法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等·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

4.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川敷地등의 교환에 따른 수익

5. 小河川附屬物중 불용물건의 처분금

6. 기타 小河川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管理廳이 지정한 수익

② 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小河川工事에 필요한 비용

2. 小河川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小河川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小河川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川敷地등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

7. 第1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것외에 小河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익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第16條(廢川敷地등의 交換) ①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구역에 편입된 土地와 廢川敷地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管理廳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川敷地등을 새로이 小河川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土地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小河川구역에 편입된 土地의 편입전의 상황·면적·수리이용시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川敷地등의 교환에 따른 土地의 가격평정 기준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廢川敷地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격은 小河川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土地와 유사한 土地의 교환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④ 第3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土地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第17條(權限의 委任) 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内務部長官은 法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総合計劃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다.

附 則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하천공사 및 점용·사용시 예치할 원상회복비용의 산정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사 업 별	예 치 액
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4.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료등의 100분의 30
5. 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원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비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小河川整備法施行令 制定理由

小河川整備法이 制定(1995. 1. 1 法律 第4873號)됨에 따라 小河川整備綜合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小河川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工事의 범위등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小河川의 지정기준등 同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規定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小河川은 平均河幅이 2미터이상이고 연장이 500 미터이상인 것으로 함(습 第2條)
- 나. 小河川整備綜合計劃 및 中期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承認節次를 정함(令 第4條 내지 第6條)
- 다. 管理廳이 아닌 者가 행하는 小河川工事 중에서 小河川의 形象과 機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補修工事등은 管理廳의 許可對象에서 제외함(令 第7條)
- 라. 管理廳이 아닌 者가 행하는 小河川工事が 총연장이 500미터이상이거나 그 기 간이 6月以上 소요되고 工事로 인한 災害發生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요 공사비의 100分의 50이내의 금액을 미리 管理廳에 預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
- 마. 管理廳은 小河川 및 小河川豫定地를 지정하거나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을 수립 하는 경우에 關係專門家 및 住民의 의견을 듣도록 함(令 第10條)
- 바. 小河川地域안에서 管農目的으로 流水 및 土地등을 精密的으로 占用하는 경우와 住民이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流水 및 土地등을 일시적으로 占用하는 경우등은 管理廳의 許可對象에서 제외함(令 第11條)
- 사. 管理廳이 小河川의 占用등을 許可하는 경우에 許可申請人에게 일정한 금액을 原狀回復費用으로 預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및 別表)

<법제처 제공>